

대통령령 제 호

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예방적·회복적 보호지원에
관한 정보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조(선도·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) ①·② (생략)	제42조(선도·보호조치 대상 청소년의 통보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법 제50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이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청소년 또는 선도·보호조치 대상 청소년(이하 “통보대상 청소년”이라 한다)을 친권자등이나 소속 학교의 장(학생인 경우만 해당한다)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4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9조에 따른 예방적·회복적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
④·⑤ (생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